

기초의학교육소위원회 운영기준

제정 2022. 7. 13.

제1조(목적) 이 운영기준은 [의과대학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 운영규칙]에 의거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 산하 기초의학교육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기초의학교육과정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있어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초의학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사항
2. 기초의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3. 기초의학교육과정 모니터링
4. 그밖에 기초의학교육과정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기초의학교육 각 과정 책임교수 및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의과대학장의 위촉으로 위원을 구성한다.

③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회 구성원의 유고로 후임자가 임명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, 회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과대학장이 지명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한다.

제5조(회의소집 및 심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6조(회의록 및 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기준은 2022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